

# 第271回國會 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2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2月21日(木)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審査된案件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1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9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9

(17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상배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위원장 이상배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윤호중 의원과 안경률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와 안경률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1조에 대한 수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인구 수 곱하기 90원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정함으로써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표 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전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78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사망에 따른 선거일의 연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96조의2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관한 수정안은 제18대 총선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개정을 통한 선거구의 분구·통폐합 조정 및 경계 조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되 기존에 형성된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선을 10만 400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31만 2000명으로 정함으로써 최대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3 대 1의 범위 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와 전남 강진군·완도군 선거구를 통합 조정하여 전남의 의석 수를 1석 감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245인,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는 54인, 총국회의원 정수는 299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칙에 대한 수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게 된 사항으로서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시 시·군·구 일부 분할에 대한 특례사항, 공무원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 예비후보자 등록 등 예비후보자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 정당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의결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정당의 지역 의석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과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18대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도입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달라는 그런 부대 의결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를 함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우리 양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형일 위원** 지금 10만 4000명으로 인구 하한선을 정했을 경우에 미달하는 지역이 현행 선거구에서 함평·영광, 그리고 강진·완도 두 군데지요? 이 외에는 다른 어떤 선거구도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호중 의원** 예.

○**양형일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이 지역이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정치적으로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지금 상징적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가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전부 놓여준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구가. 전남 지역의 선거구를 함평과 영광 또 강진과 완도를 분리해서 다른 지역구에다가 붙이는 방안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남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선거구 조정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어떤 지역도 인구 하한선에 따라서 받는 불이익이 없는데 전남만 그것을 불이익으로 받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안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존의 인구를 감안하여서 선거 구역을 약간 한두 개만 더 조정한다면 현행 국회의원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중 의원** 예, 저희 통합민주당의 원래 입장이 그와 같았습니다. 제가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니까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과 제가 마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역시 함평·영광 선거구와 강진·완도 선거구를 구역을 재조정해서 그 지역구 의석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습니다만, 함평·영광 선거구의 경우에는 구역 조정을 통해서 의석 수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데 반해서 강진·완도 선거구의 경우에 그렇게 구역 조정을 할 경우 생활권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과 같은 선거구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감안해서…… 여야 간에 이제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시다. 이 선거구 확정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송구스럽습시다만 전남 지역의 의석을 1석 줄이는 안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일 위원**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전남 지역이 지금 가장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뿐만 아니라 이 인구 하한이 무너진 선거구만 보더라도 아주 상징성을 띠고 있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에 정치적으로까지 또 다른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현행 선거구 중심 접근의 대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와 같은 의석 수를 줄이는 방안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245명이고 비례대표는 54인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강진·완도, 완도를 갖다가 해남·진도 쪽에다 붙인다는 것은, 해남·진도는 인구 하한이 무너진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 더 붙이는 이런 마이너스적 접근,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의 선거구를 일부, 여기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지역의 국회 의석 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양형일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또 다른 분들 즉 말씀하시고 또 윤 위원께서 나중에 총합적으로 말씀하세요.

○**윤호중 의원** 예.

○**위원장 이상배** 우리 선병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병렬 위원** 선거구 확정 문제는, 더더구나 선거구를 증구하는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냉철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를 확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 고려도 벗어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형일 위원님의 그런 고견이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만약에 수용이 안 되었다면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희 전체회의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거구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의 인구 상한선, 하한선은 결과로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선거구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플러스마이너스 50%의 편차 범위 내에서 선거구의 인구 수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를 어떤 방식으로 정했을 때 거기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전체회의를 할 때도 보면 그게 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민들의 요청을 저희들이 지금 수용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정하되 자치구를 쪼개서 붙이지 못한다, 이것만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상한·하한 이외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연 고려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본질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정개특위원회가 많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 확정된 결과가 플러스마이너스 50% 편차를 벗어났을 때는 다시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대전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전시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현재 24만 5881명입니다. 대전시가 24만 5000, 인천이 21만 1000, 대구가 21만 7000, 광주가 20만 1000, 부산이 19만 9000, 울산이 18만 3000입니다.

이렇게 인구 수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울산은 대전보다 인구가 40만 명이 적는데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인구가 6만 2000이 적는데 국회의원이 8명으로 늘어나서 대전보다 2명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라고 하는 정신에 의해서 조정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정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50% 편차를 벗어나느냐, 안 나느냐를 고려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본 위원의 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자치구별로 분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선거구를 하나 늘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행정비용을 들이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선거구를 늘려 줄 수 있으면 늘려 주어서 오히려 분구를 하지 않고도 정치적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루트를 열어 놓아야지 ‘야, 너희들 선거구 하나 늘리려면 행정구역 하나 늘려라’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고, 그렇게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정신에 의해서 획정했는데 플러스마이너스50% 편차를 벗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대전시장이나 지역 사회에서 자치구 하나를 늘리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에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법정구든 행정구든 자꾸 늘려서 선거구 수를 늘리는 그런 길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고 진지한 논의를 했지만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절대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도 본 위원이 누차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선이 전연 없어요, 여야가 합의한 이 제안설명 내용에도. 심히 유감이고 다시 공직선거법 제25조 정신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러한 자치구를 신설하도록 유도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해 주는 것이 훨씬 올바른 자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의 말을 그냥 지역이기주의다, 또 보편적인 기준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진적인 기준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정신이 뚜렷하게 관철되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지요?

정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섭 위원 우리 총장님, 예비후보자 등이 현수막들을 많이 걸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크게 걸기 위해서 엄청난 정력 낭비들을 하고 있고 또 그 게시 방법이 안전성이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가능하신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현

수막의 면적으로만 제한해서 과거에 획일적인 1m×10m짜리 현수막으로 걸던 부분을 좀 자율성을 부여해서 선거운동에 재량을 주자,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정진섭 위원 글썄, 그 취지는 아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기에는…… 뭐 건물 전체를 다 덮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시 방법이 불안정해서 그 안전성에 위해를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제안한다고 그러면 법 개정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나를 여쭙어보는 겁니다. 규칙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실장 이종우 지금 법에서는 읍·면·동별로 1매만 게시하고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것 규칙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섭 위원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우리가 갈 길이 워낙 멀어서……

○정진섭 위원 그런데 개정할 때 이것 함께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지금 양형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는 지금까지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병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대의견에 다음 선거 획정 시에는 광역시·도의 인구를 고려해서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조항을 같이 보태도록……

○선병렬 위원 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윤호중 간사님께서 고생을 해서 합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합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 얘기를 청취를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상배 그런데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병렬 위원 아무리 바빠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구를 획정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50% 편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5조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획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 가는 게 옳지 위원장님께서 그냥 ‘부대의견에 달아라.’ 아, 뭐 하러 부대의견에 달아서 힘들게 합니까, 선거가 끝나면 바로 자치구 증설해 버리면 되는데?

○**위원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후에 인구 상한선·하한선의 헌법재판소의 권고가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거꾸로요. 모든 정하는 순서가 그냥 인구 상한·하한 플러스마이너스 50% 편차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자세로 지금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알았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일도 위원**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 주장이, 공직선거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도 저는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직선거법의 또 하나의 조항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1년 이내에 의견, 쉽게 말하자면 그와 같은 견해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장에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8년도 1월 18일부터 2008년도 2월 15일까지밖에 활동을 못 했고, 그래서 1년 전이 아니라 6개월 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한다고 하는 주장의 실질적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다섯 가지 요건들을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중평균치를 주어야 됩니다. 인구를 50%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구역을 30%를 반영한다든지, 지세를 5%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가중치를 먼저 두고 거기에 따라서 지세 같은 것이나 옛날에 내려왔던 것이나 놓여준 문제랄지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 됩

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것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반영하자면 아마 이 선거가 결과적으로는 지나가고 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행정구역을 몇%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누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세나 기타 조건들을 어떤 기타 조건들 중에 몇 가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누가 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법률 위반된 결정 또 그와 같은 것들의 보고서를 존중해야 되는 우리 입장 그리고 현실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양당 간사 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빠른 의사진행과 이후의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 또 양형일 위원님……

○**류근찬 위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류근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근찬 위원** 류근찬입니다.

사실 선병렬 위원님이 발언하신 뒤 끝에 제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선병렬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고 전적으로 찬동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되풀이하면 대전이 지금 147만 명이고, 울산이 109만 명, 광주가 14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의원수에 있어서 광주 141만 명 보다 147만 명인 도시가 국회의원 수가 2명이 적다고 하는 문제, 더더군다나 울산이 109만 명인데 울산과 숫자가 같다고 하는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난번 제가 의견 개진할 때에도 표의 등가성 그다음에 대표성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도권과 같은 데를 보면, 권역별로 인구 수를 비교해 보면 등가성이 많이 훼손되는 지역이 사실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인구 밀도

가 높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충청권이 영남권보다 등가성이 훼손되고 있고 또 호남권보다는 훨씬 등가성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장은 대전이 울산과 똑같은 6명의 의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광주보다도 2석이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전의 경우는 15대 국회에서 7석이었는데 16대 때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바람에 1석이 느닷없이 줄어든 뒤에 이게 원상회복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1석을 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선병렬 위원 발언에 이어서 제가 동조 발언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기가 좀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이 가능하시면 결심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윤호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볼 때에는 매우 적절한 지적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상 좀 전에 배일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거구획정 문제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야말로 단지 어떤 위헌 상태에 있는 선거구들을 조정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이나 각 지역 간 의석 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형평에 맞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가 선거일을 불과 80여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20여일 정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그러나 선거일은 불과 47일 앞으로 다가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 정당에서는 이미 출마 예정자들이 공천 신청을 해서 그 공천을 심사하고 있는, 또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행 선거구획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그리고 현재의 지역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대 3 인구 기준을 초과하는, 벗어나는 위헌 상태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그침으로써 사실상 곧 치러지게 될 18대 국회의원선거가 위헌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 이외의 어떠한 선거구 획정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 사안들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1년 전에 구성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 선거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국회에 상설하는 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의견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18대 국회에서는 상설화해서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이제 마지막이지요?

○**선병렬 위원** 아니지요, 토론을 좀 하시자고요.

○**위원장 이상배** 아니, 그런데 혼자 자꾸 토론을 하시니까.

○**선병렬 위원** 각각 대변하는 거니까…… 하실 분이 없는데 저 혼자 해야지……

○**위원장 이상배** 예, 하세요.

○**선병렬 위원** 자, 보세요.

저희들이 어떤 관행화되지 않는 신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이지만 지금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개특위 위원회의 역할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한정하는 것인데, 위헌 상태만 벗어나기 위해서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지금까지 국회에 있었습니까? 위헌 상태만 벗어나면 된다는, 소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합니까? 법률에 따라서 입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

니다. 짧은 동안에 활동하면서도, 지난번에 박병석 위원장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한다,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동감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왜 개선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구를 확정할 때, 위헌 상태만 벗어나기 위해서 선거구를 확정하려면 뭐하러 선거구 확정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도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솔직히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수정의결을 할진대 여러분들은 왜 다 동의하고 다 맞는 얘기를 왜 못 받아들입니까? 수정의결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관행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100% 받는 관행이 없었고, 지금 처음 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위원회가 또 새롭게 수정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호소드립니다.

다 동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작용이 없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에 불평등을 주는 게 아닌데 이것을 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299명의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1명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례대표 1명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관행 이런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선거구 확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선거구 중구 요구를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 통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처음에 이 문제 제기하셨던 주성영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본 위원이 좀 힘을 얻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형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수정안이 이번 획정위원회 건의사항 1안과 또 교섭단체 간 합의에 충실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토론을 이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병렬 위원께서 또 류근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대전시의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가,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년 전에 벌써 선거구를 확정해 주어야 됩니다.

○선병렬 위원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가만, 내 말씀 들어 보세요.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과 정당원이 들어가서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정당원이 들어가니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과 정당원을 배제를 하고 학계, 학자, 교수, 법률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 추천한 분 열한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획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불과 1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안 2안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선거구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난번 선거의 경우에 하한선이 10만 5892명, 상한이 29만 59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9만 5916명을 초과하면 1석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만 5916명을 배로 초과할 때는 3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배 아, 그런 법이, 기준이 그렇게……

○선병렬 위원 어느 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배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그냥 전국적인 기준 없이 그렇게 늘린 것은 아니니까……

다만 대전광역시의 그런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 선병렬 위원께서 또 류근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 이외에 광역시와 도의 인구를 고려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도 간에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자 하는 것을 우리 부대의견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상배** 그렇게 해 주시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선병렬 위원**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안 전체에 대해서 선병렬 위원님 양형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아까 마지막 하셨는데? 그러면 선병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선병렬 위원** 선거구를 확정할 때 애초에 정했던 인구상한선 넘는 지역은 분구를 하든 하고 하한선에 못 미치는 지역은 다른 데하고 합치든 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구를 확정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법에, 명문에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율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가지고서……

○**선병렬 위원** 아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구를 확정했을 때, 공직선거법 25조에 의해서 선거구를 확정했을 때 인구편차가 플러스마이너스 50%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지, 선거구를 확정할 때 인구상한선 넘는 지역, 인구하한선을 벗어난 지역만 갖고 논의하라 이런 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면 선거구 획정에 금과옥조 같은 기준이 공직선거법 25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선병렬 위원** 그러면 공직선거법 25조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확정하고, 그 선거구를 확정 한 후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헌법재판소 결정인 인구상한선, 인구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하여

튼 위원님 의견에……

○**선병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봐 봐요. 저희들이, 아니, 모든 지역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은 자꾸 그렇게 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 삼는 지역이 만약에 있다면, 다음 선거 때 그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정개특위에서 사안별로 그것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상배** 자, 예, 알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기현 위원** 다 들었고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참작했습니다.

○**선병렬 위원** 아니, 그런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도 나오셔서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적……

○**위원장 이상배** 아니, 어제 나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선병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은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법률적……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묵살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상배** 묵살하는 게 아니지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 위원** 국회는 회의체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병렬 위원님 그 의견을 우리 부대의 견에 접수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선병렬 위원** 의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선병렬 위원 반대하시는 것으로 합니까?

○**류근찬 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회를 왜 이렇게 운영해요? 정개특위가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결정을 자꾸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상배** 아니, 그런데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사항이에요!

○선병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선병렬 위원 반대하시지요?

○선병렬 위원 표결하세요, 정식으로!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류근찬 위원……

○류근찬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선병렬……

○선병렬 위원 표결을 해야지요!

(「표결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 류근찬 위원 두 분 반대의견 있었다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병렬 위원 표결선언하시라니까요!

○위원장 이상배 두 분 반대하셨잖아요.

○선병렬 위원 그런 표결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위원장 이상배 어디서 배우다니!

(장내소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요!

법안 성안 작성과 체계·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8시03분)

○위원장 이상배 이어서 제2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사안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용히 해요!

먼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되, 방금 논의해서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없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획정위원회가 워낙 짧은 기간 내에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맡겼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47건의 정치관계법 안건에 대해서 30회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보좌진 등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기현	김정훈	류근찬	민병두
박세환	배일도	선병렬	안경률
양형일	윤호중	이상배	이인영
장윤석	정진섭	주성영	최규성
최인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법제실장	조영식 이종우
---------------------------	------------